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서-참조6)

2021. 8. 30.(월) 10:00

본 회 의 장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목 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 및 임기 정비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0조제4항을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 지급하며,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 안 제20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 안 제28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의 내실화와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 보장 및 우리 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 심도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청소년의회’로 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조례 재정비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 의원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9조제2항 중“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를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7조 제2항 제7호를

“7.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제 구축,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2항 제5호 중

“구축”을 “구축지원”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제7호를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의 지원”으로 하고,

- 안 제10조 제1항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 안 제10조 제2항을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 안“제10조 제4항”을 “제10조 제3항”으로 하고,

- 안“제10조 제5항”을 “제10조 제4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 상 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산업 실증을 성남시 첨단산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대 하고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실증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9호 중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자율주행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
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계약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0.12.22. 공포)사항과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운영상 부합되지 않은 조문 정비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8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복지이음정보센터로 개편하고 스마트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1년 12월 2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2년 1월 1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2022년 2월 6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의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2년 1월 24일에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하안마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
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중동 국공립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 용 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과

관계법령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 첫 번째, 임정미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이 현 시세에 비해 낮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원 금액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동일하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제2항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액”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호당 용자한도액) 지원액”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산성대로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원도심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조례 용어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적법한 행정·정책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이 수립 및 시행됨에 따라 사업지원 및 규제완화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호 근